

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53호
의결년월일	2001. 3. 14 (제85회)

제안년월일 : 2001. 3. 13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주 문

-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별첨과 같이 제안한다.

제안사유

- 지난 2000년 9월 25일 부천시조례 제1788호로 공포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자문위원의 자문분야를 기획재정, 행정복지, 건설교통의 3개 분야로 하던 것을 의회운영을 추가하여 4개 분야로 함(안 제3조)
- 자문위원의 임기를 각 분야별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던 것을 자문위원의 과업수행기간으로 함(안 제4조)

개정조례안 : 별 첨

관계법령 밟쳐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2호”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획재정”을 “의회운영·기획재정”으로 하고 “3개 분야”를 “4개 분야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임기) 자문위원의 임기는 과업수행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임무) ①(생략) 1. (생략) <u>2.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대안의 개발</u> 3 및 4(생략) ②(생략)	제2조(임무) ①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<u>(삭제)</u> 3 및 4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 ①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, 자문 분야는 기획재정·행정복지·건설교통의 3개 분야로 한다.	제3조(구성) ①..... <u>의회운영·기획재정·행정복지·건설교통의 4개 분야</u>
제4조(임기)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 임할 수 있다.	제4조(임기) 자문위원의 임기는 과업수행기간으로 한다.